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김기창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9년 5월 31일

나. 회부일자 : 2019년 6월 4일

3. 제안이유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 변경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용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약어 명칭 변경

(안 제8조, 제10조, 제19조)

나.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 변경 등

(안 별표 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18. 4. 6. 충청북도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의 실무반 편성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안 제8조, 제10조, 제1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약칭을 사용하여 조례안의 문구를 간결하게 규정함.
- 안 별표 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 등의 명칭을 변경함.
-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19. 5. 24.~'19. 5. 29.)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의 실무반 편성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